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 성 남\*

<차례> \_\_\_\_\_

- I. 서론
- II.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방식의 문제점
- III. 해외입법 사례
- IV.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방식 개선방안
- IV. 결론

주제어: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보험, 동의방식, 서면동의,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국문초록> 타인의 서명동의제도는 동의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제도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엄격한 입법방식이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계약 체결방식의 전자화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자서명제도의 도입할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가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되고 보험계약자 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원본 문서의 조회가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계약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시 보험료 할인혜택 등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 청약서의 위·변조로 인한 보험자의 악용 시 소비자가 받을 불이익은 크므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정 부문에서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을 포함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확인방식의 전자화에 보태어 피보험자의 동의도 전자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거래의 실질적 전자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업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질서 유지를 위한 강행법적 규정은 가급적 보험업법에 그 임무를 위양하고, 보험계약법은 사적자치의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보다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제고와 창의적인 기업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적 규정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6.06.10), 심사개시일(2016.06.13), 게재확정일(2016.06.28)

## I. 서론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이라 한다)의 경우 이를 무제한 인정하면 보험이 도박화될 우려가 있고,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동의주의 입법례에 따라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731조).<sup>1)</sup>

그러나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은 관련 서류의 공급·출력·배송·보관 등의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하고, 원본 서류의 손실 및 분실로 인한 계약자의 정보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세와 전자금융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sup>2)</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면동의방식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규정중의 하나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보험계약의 체결관행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면계약의 방식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전화, 사이버 물, 인터넷 등에 의한 비대면 보험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대면계약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통적인 서면방식이 아닌 태블릿 PC 등을 통한 비서면 계약체결 방식으로 발전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국 종이청약 시대는 사라지고 모바일 장치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보험거래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8판, 박영사 2016. 788~789면; 장덕조, 「보험법」, 제2판, 법문사, 2015.443면 참조; 岡田豊基, 「現代保險法」, 中央經濟社, 311~312면; 山下友信·竹濱修·洲崎博史·山本哲生, 「保險法」, 第3版 補訂版, 有斐閣, 232~233면; 福田弥夫·吉笛恵子, 「逐條解説 改正保險法」, ぎょうせい(株), 2009.116면 참조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문광섭, 2013.4.), 4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융상품 판매액(A)	1,884	1,787	1,531	1,507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B)	41	57	59	69
비중(B/A)	2.2	3.2	3.9	4.6

※ 비대면채널 판매액 중 인터넷 판매액 및 비중 추이: ('11년) 36조(87%) → ('12년) 49조(85%) → ('13년) 52조(88%) → ('14년) 60조(87%)

그런데 법무부 및 금융당국은 태블릿 PC를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의 경우에서 타인의 사망보험의 서면동의 방식을 종이에 의한 동의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보험거래를 체결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되고 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방식을 이와 같이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금융의 전자화, 보험거래의 신속하고 안전한 체결 및 거래의 발전을 억제·제한하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아날로그 방식에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 방식을 IT 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은 디지털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방식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도와 관련한 해외입법 사례를 고찰한 후 타인의 서면동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방식의 문제점

### 1. 서설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제도는 ‘보험계약성립 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여 보험의 선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sup>3)</sup> 이러한 동의방식의 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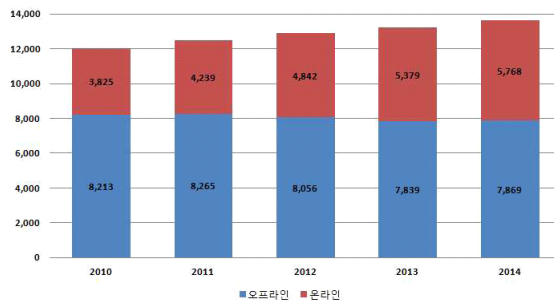
3)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성남,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12.8. 참조

회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의 용이 등의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보험자의 무효 주장이나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무효 조항을 악용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해 달라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면동의방식은 전자적 거래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그 방식의 적합성이 타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면동의 방식은 결국 당시 보험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수용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러한 방식은 영구불변의 것은 아니고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타인의 서면동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i) 모집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ii) 보험모집 채널 및 방식의 다양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iii) 모럴사고 및 분쟁방지 제도 기여에 미미하다. (iv) 최근의 해외 입법사례에 비추어 과도하게 엄격한 방식이다. (v) 보험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vi) 정부의 핵심 정책에 반하는 제도이다. (vii) 통신판매 전문회사 및 인터넷 보험 전문회사 형해화시키고 있다. (viii) 보험회사의 영업방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 2. 보험모집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 전문회사를 하나의 보험회사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조 제2항). 2001. 10. AXA손해보험(구 교보자동차보험)이 온라인 자동차보험전문회사로 출범한 이래 온라인 보험의 판매는 상당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판매형태별 가입현황>  
(단위 : 천건)



<출처 : 보험개발원 통계서비스(2014년 기준)>

이러한 통신판매전문회사 및 온라인 전문보험사 외에 기존 종합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직판채널을 통한 다양한 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하고, 모집비용의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으로 보험소비자 저변을 점차 확대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온라인 채널의 경우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인터넷 및 전화 등에 의한 보험가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보험소비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보험모집 채널 및 방식의 다양화에 부응하지 못함

보험모집채널은 전통 보험설계사 채널 이외에 GA, 금융기관보험대리점, TV 홈쇼핑, 사이버몰 등 다양한 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보험모집 방식도 대면 방식에 의한 모집에서 전화, 인터넷,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 채널로 확대되고 있다. 실무상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의사를 분명히 하고, 보험료 산정의 전제가 되는 위험상황 및 정도를 서면에 의하여 고지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성립 및 고지사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청약서라는 서면양식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청약서에는 보험 가입의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는 의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비서면 방식이 점차 증가 되고 있다. 특히,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청약방식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4)</sup> 전자청약이란 보험모집종사자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상품 설계에서 보험 청약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청약에 의한 보험가입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타인의 사망보험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은 태블릿 PC상

4) 관련기사(2015년 11월 11일 시사오늘, 시사ON, 서지연 기자 sisaon@sisaon.co.kr)

11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생명의 신계약 건수 중 27.1%이 전자청약으로 이뤄졌으며, 한화생명도 올 상반기에만 전체 신계약에서 약 30%, 전자청약이 가능한 상품 중에서는 약 40%가 전자청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에서도 올 상반기 전체 신계약에서 전자청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6%를 기록했다.

의 서명을 통한 동의로는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험모집이 사실상 곤란하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 직접 대면방식이 아닌 전화, 인터넷,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통한 보험판매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통신매체나 전자기기를 통한 보험판매는 기존의 서면청약절차를 대신하여 전자청약 시스템을 활용한다.

한편,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의사를 명확히 하고 고지의무의 이행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생명보험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그러나 모든 보험거래에서 자필서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거래의 형태에 따라 보험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이행해야 할 자필서명 방법을 아래 표와 같이 다양화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는 오로지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상의 애로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특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을 일치시켜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계약 체결 시 자필서명 등 동의방식 비교>

구분	서명 필요자	동의 방식			
		대면 서면계약	대면 전자계약	사이버 몰 계약	TM 계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자	서면	전자서명	전자서명	녹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상이	보험계약자	서면	전자서명	전자서명	녹음
	피보험자	서면	서면	서면	서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상이 계약은 대면 서면계약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체결 불가능, 별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

#### 4. 모럴사고 및 분쟁방지 제고 기여 미비

타인의 사망보험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이익주의, 친족주의, 동의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의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법 제731조의 타인의 동의제도는 보험의 도박화 방지, 도덕적 위험 방지가 그 주된 목적이다. 동 법이 지향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가입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인데 보험청약서에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단순한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서면에 의한 동의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입회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의 일방적인 피보험자 동의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위변조가 용이하다. 그러나 태블릿 PC에 의한 보험가입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의 입회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위변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보험모집종사자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대면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추가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고, 계약체결 후에는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통한 계약확인을 거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타인의 사망보험 규제제도 간 기능수행 정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규제방법 및 기능 수행정도>

구분	도박보험방지	도덕적 위험방지	인격권 침해방지	경제적 수요충족
이익주의	우수	보통(우수)*	보통	우수
친족주의	우수	보통	보통	미흡
동의주의	우수	보통	우수	보통

### 5. 최근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

비교적 최근 개정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단순한 동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는 각국의 동의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타인의 사망보험의 서면동의 방식은 외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엄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역의 경우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사실상 금지하였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15.5.18. 금융위원회). 신분증 사본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방식 중 2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실명확인하고 있다.

<동의요건 엄격성 비교>

구분	피보험이익 요부	동의 요부	서면 요부	동의 시기 제한
영국	○	×	×	×
미국	○	가족의 경우 원칙적 동의 불요	△	×
독일	×	○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	○	×
프랑스	×	○	○	×
벨기에	○	×	×	×
중국	○	○	×	×
일본	×	○	×	×
한국	×	○	○	○

### 6.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

타인의 서면동의만을 인정하여 태블릿 PC를 통한 보험가입이 제한되고 별도의 청약서를 통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대법원은 서면 동의를 결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어, 보험자가 이를 악용하여 피보험자의 동의 결여를 거론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

절할 가능성 상존한다. 서면동의의 엄격을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sup>5)</sup>

## 7.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하는 제도

전자 정부의 구현, 핀테크 및 녹색산업 육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정책 기조에 반한다.<sup>6)</sup>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sup>7)</sup>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상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법 등 전자관련 법제도를 제정하여 전자환경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상법 등 보험관련법도 이러한 IT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은 1991년 상법 개정 당시 청약서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상황이므로 종이문서에 의한 동의방식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체결방식이 IT 기술 등과 접목하여 점차 태블릿 PC,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방식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바, 기존의 서면동의 방식은 ICT 기술이 접목된 전자서명 등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필요하다. 서면동의 방식만을 고집할 경우 보험업에서 핀테크 발전에 장애가 되고, 보험소비자의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

종이에 의한 서면동의를 요구할 경우 엄청난 양의 실물서류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이 증가되어 보험료 인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실물서류 분실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이 증대된다. 또한 종이 사용 절감 등을 통한 물자 절약 및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추진하는 녹색산업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태블릿 PC 등을 통한 무종이 보험계약 체결 확대를 통하여 상당한 양의 종이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보험증권을 E-Mail로 수령할 경우 할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바(약 1,000원),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5)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所 編, 「解説 保險法」, 弘文堂, 2008, 134면.

6) 대통령령은 최근 국무회의시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핀테크 언급(16.3.15).

7)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의 종류는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있다.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체결의 경우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의 방식의 전자화로 보험회사의 계약 및 서류보존 비용의 절감을 통한 저렴한 보험구입 가능성 제고된다. 보험계약의 전자화로 보험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등의 관리 용이성 증대 및 정보유출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다.

## 8. 통신판매 전문회사 및 인터넷 보험 전문회사 형해화

보험업법은 통신판매전문회사제도를 두고 있는 바, 통신판매회사는 그야말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을 전문으로 하여 모집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형태의 하나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회사의 영업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편·전화·컴퓨터 통신만으로 영위하는 통신판매 전문회사의 영업기회를 제한하고, 기존 보험사의 인터넷 전용 상품 등 창의적인 상품개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여 이들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9. 위헌적 소지 존재

민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식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헌법 제10조). 이른바 계약자유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sup>8)</sup>

타인의 사망보험의 도덕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방식을 제한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을 서면동의로 한정함으로써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제기된다. 피보험자의 동의방식의 다양화를 인정하여 민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8) 헌재 1991. 6. 3. 선고 89헌마204.

### III. 해외입법 사례

#### 1. 서설

타인의 사망보험의 가입을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그 타인의 생명에 대한 도박적 이용 가능성, 고의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위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1745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과 1774년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을 제정하여 보험계약의 도박적 위험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가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익주의, 친족주의, 동의주의가 있다. 각 국에서는 이중의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거나 병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타인의 사망보험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동의주의는 서면동의주의를 취하는 경우와 단순동의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면동의주의는 그 방식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최근에 개정된 일본이나 중국은 단순동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동의수단으로서 전자서명의 허용에 관해서는 단순동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규제제도 비교>

구분	내용	장단점	채택국가
이익주의	피보험이익이 있는 경우에 계약체결 허용	도박보험방지 유용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채택곤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 개념 모호	영국, 미국 등
동의주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허용	판단이 명확, 동의의 위조 등 가능성 동의를 형해화에 따른 문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친족주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허용	도박보험, 도덕적 위험 감소 경제적 수요 충족곤란 재산권성 제한	일본(1899)

## 2. 영국

### (1)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요구하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금전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한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9)</sup>

###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부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고 가족관계 및 사업상의 관계에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험이익을 갖게 되고, 배우자간에는 금액한도에 관계없이 서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타인의 경우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 범위반으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sup>10)</sup> 보험계약 체결 시 타인의 동의 또는 서면동의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있다.

## 3. 미국

### (1) 피보험자의 자격

뉴욕 주 보험법은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금전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혈연관계나 애정 기타의 이익도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한다.

### (2) 피보험자의 동의

다수의 주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이나 14세 6

9) Life Assurance Act 1774

1 No insurance to be made on lives, etc, by persons having no interest etc From and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no insurance shall be made by any person or persons, bodies politick or corporate, on the life or lives of any person or persons, or on any other event or events whatsoever, wherein the person or persons for whose use, benefit, or on whose account such policy or policies shall be made, shall have no interest, or by way of gaming or wagering; and that every assurance made contrary to the true intent and meaning hereof shall be null and void to all intents and purposes whatsoever.

10) JOHN BIRDS, MORDERN INSURANCE LAW, fourth edition, SWEET & MAXWELL, 1997, P.41~44.

개월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보험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수기동의(consents in writing )도 필요 없다.<sup>11)</sup> 단체보험, 단체상해질병보험, 가족보험의 경우도 수기동의가 불요하다.

### (3) 전자서명 허용 여부

수기동의 대신 전자서명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문헌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찍부터 전자서명제도가 발달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에서는 전자서명이 당연히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 4. 프랑스

### (1) 피보험자의 대상 제한

보험법 L132-3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정신병원에 수용중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은 금지된다.”고 규정한다.<sup>12)</sup>

11) 제3205조

(c) No contract of insurance upon the person, except a policy of group life insurance, group or blanket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or family insurance, as defined in this chapter, shall be made or effectuated unless at or before the making of such contract the person insured, being of lawful age or competent to contract therefor, applies for or consents in writing to the making of the contrac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A wife or a husband may effectuate insurance upon the person of the other.  
(2) Any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life of a minor under the age of fourteen years and six months or any person upon whom such minor is dependent for support and maintenance, may effectuate a contract of insurance upon the life of such minor, in an amount which shall not exceed the limits specified in section three thousand two hundred seven of this article.

12) Article L132-3

All persons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acting a whole life insurance on a minor below twelve years of age, a person of full age put in wardship or a person placed in a psychiatric hospital. Any insurance contracted in breach of said prohibition shall be null and void. The nullity shall be decided at the request of the insurer, policyholder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incapable person. Premiums paid must be returned in full.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shall also be liable to a fine of € 4,500 per insurance policy contracted in deliberate breach of said prohibition.

Said provisions shall not in any way prevent in the case of a death benefit insurance the reimbursement of premiums paid to perform a life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on the life of one of the persons

## (2) 피보험자의 동의 요부

보험법 L132-2 제1항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제3자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피보험자가 일시보험금 또는 최초의 정기급여액(연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로 정하고 있다.<sup>13)</sup>

## (3)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 가능 여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규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해 in writing을 서면상의 동의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 5. 독일

## (1) 피보험자 자격 제한

사망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타인에 의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무능력자이거나 한정책임능력자인 경우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 (2) 피보험자의 동의

보험계약법 제150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인수될 수 있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합의된 급부가 통상의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sup>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above or the reimbursement of premiums paid to perform a survivorship insurance of which 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above is beneficiary.

13) Article L132-2(Act no. 81-5 of 7 January 1981, Article 3, Official Journal of 8 January 1981, corrigendum, Official Journal of the French Republic of 8 February 1981)

(Act no. 92-665 of 16 July 1992, Article 21, Article 42, Official Journal of 17 July 1992)

Death benefit insurance contracted by a third party on the life of the insured shall be null and void if the latter has not consented thereto in writing with indication about the amount of the capital or annuity initially covered. Under pain of nullity, the insured's consent must be given in writing for any assignment or giving of pledge and for the transfer by a third party of the benefit of the contract signed on his life.

### (3)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취득

독일의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나 전자서명에 의한 서명 허용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만 독일의 경우 서면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6. 일본

### (1) 피보험자의 동의 요구

타인의 사망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법 제38조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동의방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므로 서면, 구두 등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서명 등도 동의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sup>16)</sup> 계약체결 시에 동의가 행해질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체결후의 동의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sup>17)</sup> 특히, 2008년도에 상법에서 보험계약법을 따로 독립하여 법전화하면서 대폭 개정하였는데,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으로 증거의 명확성 및 피보험자가 인식할 기회의 확보 필요성의 관점에서 서면성을 요구하는 외국법이 다수 존재하나 개정 전 상법에서도 동의방식을 제한하지 않았고, 독립법전화 된 보험법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i) 서면성을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한다면 오히려 피보험자의 의사에 반

14) § 150 Versicherte Person

(1) Die Lebensversicherung kann auf die Person des Versicherungsnehmers oder eines anderen genommen werden.

(2) Wird die Versicherung für den Fall des Todes eines anderen genommen und bersteigt die vereinbarte Leistung den Betrag der gewöhnlichen Beerdigungskosten, ist zur Wirksamkeit des Vertrags die schriftliche Einwilligung des anderen erforderlich; dies gilt nicht bei Kollektivlebensversicherungen im Bereich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Ist der andere geschäftsunfähig oder in der Geschäftsfähigkeit beschränkt oder ist für ihn ein Betreuer bestellt und steht die Vertretung in den seine

Person betreffenden Angelegenheiten dem Versicherungsnehmer zu, kann dieser den anderen bei der Erteilung der Einwilligung nicht vertreten.

15) 第三十八條(被保險者の同意) 生命保險契約の当事者以外の者を被保險者とする死亡保險契約(保險者が被保險者の死亡に關し保險給付を行うことを約する生命保險契約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は、当該被保險者の同意が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16) 甘利公人・山本哲生, 「保險法の論點と展望」, 商事法務(株), 1999년.

17) 石山卓磨 編著, 「現代保險法」 第2版, 成文堂, 2011, 277면.

하는 경우도 생기고, (ii)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하는 것을 저해하며, (iii) 보험자에 의한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8)</sup>

## (2) 동의방식으로서 전자서명 활용

보험업법시행규칙 제11조(사업방법서 등의 심사기준)에서 보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동의 방식에 대해 서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명료하게 정할 것을 규정하고 상품 설계 시 사업방법서에 전자서명 방식을 명확히 할 경우, 상품 판매 시에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sup>19)</sup>

## (3)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취득 활용·실무

동의 취득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반 이용상 실무는 각 사 내부통제(compliance)에 따른다.

# 7. 중국

## (1)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 및 동의 요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보험법은 피보험자의 자격을 일정한 자로 제한, 절차적 요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1) 본인,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전항 이외에 보험계약자와 부양관계를 갖는 가족과 친족(민법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4) 보험계약자와 근로관계가 있는 노동자, (5)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피보험자에 의해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5)에서

18) 竹濱 修 · 木下孝治 · 新井修司, 「保險法改正の 論點」, 法律文化社, 2009.3.20. 238면; 萩本 修 編著, 「保險法一問一答」, 商事法務(株), 313면.

19) 第十一條 (事業方法書等の審査基準) 法第五條第一項第三号 ホに規定する内閣府令で定める基準は、次に掲げる基準とする。

二 次のイ及びロに掲げる手続に関する当該イ及びロに定める同意の方式について、書面による方式その他これに準じた方式が明瞭に定められていること。

イ 保險契約の締結 (被保險者の同意を必要とする契約の変更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

保險法第三十八條 又は第六十七條第一項 の同意

피보험자에 의해 동의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sup>20)</sup>

## (2) 서명동의 방식에서 동의방식으로 완화

2002년도 보험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의방식을 서면동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 개정 보험법에서는 서면동의를 동의로 개정하였다.<sup>21)</sup> 이러한 동의방식의 변경은 인터넷과 전화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피보험자로부터 전자메일과 구두에 의하여 동意的 의사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 8. 시사점

### (1) 서면동의방식 완화 필요

종래의 우리나라 구 상법에서는 동意的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91년 개정상법 제731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구두나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동意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 第三十一條 投保人對下列人員具有保險利益：

(一) 本人；

(二) 配偶、子女、父母；

(三) 前項以外與投保人有撫養、贍養或者扶養關係的家庭其他成員、近親屬；

(四) 與投保人有勞動關係的勞動者。

除前款規定外，被保險人同意投保人爲其訂立合同的，視爲投保人對被保險人具有保險利益。

訂立合同時，投保人對被保險人不具有保險利益的，合同無效

21) 第三十四條 以死亡爲給付保險金條件的合同，未經被保險人同意并認可保險金額的，合同無效。

按照以死亡爲給付保險金條件的合同所簽發的保險單，未經被保險人書面同意，不得轉讓或者質押。父母爲其未成年子女投保的人身保險，不受本條第一款規定限制

## (2) 최근 입법환경 변화 반영 필요

현행 서면 동의 방식은 도덕적 위험방지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상법의 서면동의 조항을 단순한 동의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거래, 인감발급, 전자어음 발행, 증권거래 등에서 전자서명이 널리 인정되고, 핀테크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자서명 등의 안정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서면동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3) 최근 해외 입법사례 반영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미국의 경우 전자서명제도가 거래관계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제도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서면동의 제도 도입이 한 때 논의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서명동의제도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 동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보험법은 서면동의제도를 포기하고 동의주의로 환원하였는 바, 이러한 입법의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자서명법은 1995년 미국의 유타 주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되었고 전자서명법의 시대구분을 기술독점(Technological Exclusivity)시대에서 기술 중립(Technological Neutrality)시대를 거쳐 기술 중립의 완화시대(Moderate Degree of Technological Neutrality)로 전환하고, 싱가포르는 이를 반영하여 전자서명법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이러한 싱가포르 입법 방식을 채택하여 기술발전에 대하여 개방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전자서명 관련 법률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험거래에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술발전을 유도하여 동의제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자서명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2) Stephen E. Blythe, CHINA'S NEW ELECTRONIC SIGNATURE LAW AND CERTIFICATION AUTHORITY REGULATIONS: A CATALYST FOR DRAMATIC FUTURE GROWTH OF E-COMMERCE, Chicago-Kent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p. 1~5.

## IV.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방식 개선방안

### 1. 서설

상법 제731조는 그 개정 취지와 달리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단순 동의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서면동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발전 등을 도외시 한 것이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에도 반하므로 전자서명 도입 등 계약체결 방식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서면동의 방식 외에 공인전자서명방식 등을 추가하는 방안 둘째, 서면동의 방식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안 셋째, 보험계약의 선의성 확보 절차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방식 추가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sup>23)</sup> 방식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기존의 입법안과 동일하므로 입법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사항으로 전자서명 또는 공인서명 방식의 안전성 설명 자료 등을 보완하고, 동 방식의 채택과 함께 감독 법규적으로 위·변조 방지 및 피보험자의 진정한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보험모집종사자 입회 및 해피콜에 의한 구두 확인 절차를 병행토록 한다. 향후 ICT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방식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23) 공인전자서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즉 (i)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ii)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iii)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iv)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u>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② (현행과 같음)	서면동의 방식과 동등한 가치 또는 우수한 가치가 있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 추가

### 3. 서면동의 방식의 엄격성 완화

상법 제731조에 의한 서면방식 동의를 삭제하여 단순한 동의로 같음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단순동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동의여부에 대한 다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현행 청약서에 의한 서면방식 외에 전화녹취,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이므로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히 서면동의 방식은 상거래의 종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취득 비용 및 운용비용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그 방식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생체인증이나 전자서명방식에 비하여 비밀성 보장이나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무결성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열등한 방식으로 평가되므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동의방식으로 고유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각 유형별 암호화 특성 비교><sup>24)</sup>

구분	자필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생체인증 (Biometric signature)	전자서명 (Digital signature)
신뢰성 및 비밀성 (confidentiality)	×	○	○
무결성(integrity)	×	○	○
인증(authentication)	○	○	○
허가(authorization)	×	○	○
부인방지 (Non-repudiation)	○	○	○

따라서 서면동의 방식을 단순동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보험회사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b>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b>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b>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동의를</b>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서면동의 방식을 단순동의 방식으로 전환

24) Tomas Balint · Jozef Bucko, Comparative Analysis of Handwritten, Biometric and Digital Sign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 4, No.2, 2013, p.48-51.

#### 4. 보험계약의 선의성 확보 절차 이원화

인보험계약에서 이익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친·인척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일정한 자로 제한하고, 여기에 더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며, 이익주의와 동의주의를 결합한 입법안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도 가능하다. 미국의 뉴욕 주 및 캘리포니아 주 보험법은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보험가입 절차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뉴욕 주 보험법 제3205조, 캘리포니아 주 제10110조 및 제10110.1(c)) 우리 입법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신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u>①보험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1. <u>보험계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u> 2. <u>보험계약자가 교육 및 생계비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u> 3. <u>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u>	이익주의에 더하여 동의주의를 병행 ※인보험의 피보험 이익성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의 대상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이러한 자에 대하여 동의리는 절차적 요건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②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u>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u> 얻어야 한다.	②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u>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동의를</u> 얻어야 한다.	
③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u>제1항과 같다</u>	③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u>제1항과 같다.</u>	

## 5. 보험업법에 의한 적절한 보충적 규제 장치 마련

### (1) 도덕적 위해 방지를 위한 보충적 수단 규정 마련

상법의 규정에 추가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타인의 진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피보험자의 본인에 의한 동의를 확보하는 다양한 보충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려할 수 있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i) 지문, 홍채 등을 통한 생체인증, (ii) 화면 캡처, 신분증 카피본 입력, (iii)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건 실시 등이다.

### (2) 완전판매모니터링 시 확인항목 추가

피보험자에게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인지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절차에서 타인의 자유로운 동의 등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선별 한다. 보험업법은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확인제도를 두고 있는 바, 여기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보험가입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 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 <보험업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① ~ ④ 생략  ⑤ (신 설)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b>⑤ <u>보험회사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알려야 한다.</u></b>	피보험자 보험가입 사실 통보 제도 또는 동의 확인제도 시행  ※ 통보수단은 전화 통화 녹음, 문자 전송, 이메일 통보 등

## 6. 기대효과

타인의 사망보험의 동의 방식을 완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다.

### (1) 보험가입의 편의성 증대 및 보험가입 기회 확대

보험계약은 상거래상의 계약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 만약 서면동의를 강조할 경우 전자기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시 종이에 의한 서면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사무처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제도 마련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상품 구입의 용이성 제고가 가능하다.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제도 운용은 보험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보장의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 (2) 보험료 인하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출 절감

전자적 방식 또는 녹음 등에 의한 동의방식의 채택으로 서면서류의 관리비용 및 임차공간 축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태블릿 PC를 위한 계약체결 절차 외에 서면동의 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모집절차의 간소화로 보험모집비용 지출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 (3)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주장 불가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서도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처리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서면동의 미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보험회사가 무효처리를 주장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중사자의 설명의무 불이행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에 대한 입증의 부담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동의방식의 다양화로 보험계약의 무효전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 보험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기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무효주장 등을 사유로 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무효주장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sup>25)</sup>

#### IV. 결론

지금까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타인의 서면동의제도는 동의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제도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엄격한 입법방식이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계약 체결방식의 전자화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자서명제도의 도입할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가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되고 보험계약자 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원본 문서의 조회가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계약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시 보험료 할인혜택 등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 청약서의 위·변조로 인한 보험자의 악용 시 소비자가 받을 불이익은 크므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정 부문에서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을 포함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sup>25)</sup>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확인방식의 전

25) 참고로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대법원 2006.06.29. 선고 2005다11602 판결).

26) 보험업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④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

사회에 보태어 피보험자의 동의도 전자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거래의 실질적 전자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업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질서 유지를 위한 강행법적 규정은 가급적 보험업법에 그 임무를 위양하고, 보험계약법은 사적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보다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제고와 창의적인 기업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적 규정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상 행위자 본인 여부 확인 제도>

구분	거래방법	확인방법	확인자	확인의무자	근거규정
설명내용확인	대면/비대면 전화 등 통신판매, 사이버몰 인터넷 등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보험 계약자	보험회사 보험모집 중사자	보험업법 제95조의2
적합성의 원칙	상동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상동	상동	보험업법 제95조의3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철회 및 해지	비대면	음성녹음, 팩스 상 지필서명	상동	상동	보험업법 제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보험모집 철회 및 해지	비대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공인전자서명, 자필서명	상동	상동	상동
승환계약 본인 여부 확인	대면/비대면 전화 등 통신판매, 사이버몰, 인터넷 등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상동	상동	보험업법 제97조

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8판, 박영사, 2016.
- 장덕조, 「보험법」, 제2판, 법문사, 2015.
- JOHN BIRDS, MORDERN INSURANCE LAW, fourth edition, SWEET & MAXWELL, 1997.
- 福田弥夫·吉笛恵子, 「逐條解説 改正保険法」, ぎょうせい(株), 2009, 116면 참조
- 岡田豊基, 「現代保険法」, 中央經濟社. 2012.
-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所 編, 「解説 保険法」, 弘文堂, 2008.
- 竹濱 修 · 木下孝治 · 新井修司, 「保険法改正の 論點」, 法律文化社, 2009.
- 萩本 修 編著, 「保険法(一問一答)」, 商事法務(株), 2009.
- 甘利公人·山本哲生, 「保険法の論點と展望」, 商事法務(株), 2009.
- 山下友信·竹濱 修·洲崎博史·山本哲生, 「保険法」 第3版 補訂版, 有斐閣, 2015.
- 石山卓磨 編著, 「現代保険法」 第2版, 成文堂, 2011.
- 이성남, “타인의 생명보험의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12.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문광섭, 2013.4.).
- Stephen E. Blythe, CHINA'S NEW ELECRONIC SIGNATURE LAW AND CERTIFICATION AUTHORITY REGULATIONS: A CATALYST FOR DRAMATIC FUTURE GROWTH OF E-COMMERCE, Chicago-Kent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Tomas Balint · Jozef Bucko, Comparative Analysis of Handwritten, Biometric and Digital Sign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ol. 4, No.2, 2013.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In Insurance Contract on Another person's Life

Lee, Sung-Nam

Written consent system of the others contributed to ensure the clarity and to prevent the confli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 holder. but it is overly strict manner. also this system does not correspond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f we have a electronic signature system. it's system help to decrease the fake and falsif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whenever policy holder want to check the file they can check it.

Furthermore, insurance consumers can have a right to access the insurance information. and they can receive direct benefits, such as insurance discount. after the accident occurred, if the insurer misuse the counterfeited insurance application, insurance consumer may get a big disadvantage. to remove this disadvantage, we should revise the insurance contract act.

meanwhile we have adopted the Digital signature or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through insurance business act. For such practical electronic business transactions, We need to be electronic system 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and We should leave task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 and to establish insurance contract order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for the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and Self-regulation we should

give a mission as the basic insurance law infrastructure.

**Key Words** : Life insurance Contract on Another person's Life, Digital signature, the written agreement of a life insurance for others,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consent way.